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47호
2022. 1. 4.(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4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2-4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4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 (1) 노동정책담당관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사무 신설(안 제7조의2)
- (2) 안전총괄과 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사무 신설(안 제20조)

나. 서울숲 및 서울로 시설 운영 직영화에 따른 기구·사무분장 정비

-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숲공원지원과’ → ‘서울숲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25조)
-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로관리사무소’ 신설(안 제127조)
 - ▶ 공원녹지정책과 내 ‘서울로 위탁관리 및 운영’ 사무를 삭제(안 제23조)하고 중부공원 녹지사업소로 이관 및 시설운영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4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관리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조정(5급이하 29명)

- (본 청) 안전총괄실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 소방재난본부 2
-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3, 상수도사업본부 1, 서북·어린이·은평병원 6,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서울식물원 2

나. 서울숲 및 서울로 시설 운영 직영화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5급이하 15명)

- (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
- ※ 푸른도시국(본청)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사업소) 정원이체 4명 포함

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멸종위기종 생태연구 전문인력 증원(연구사 2명)

- 서울기록원 기록연구사 +1,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
- ▶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명은 장기결원과 상계조정(농업9급 △1명)

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원조정(4급이하 38명)

- (의회사무처) 행정4급 +1, 행정5급 +2, 행정6급 +31, 행정7급 +3
- ▶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직급조정 1명 포함(행정7급 △1 → 행정6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